

인천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가단207419 판결 [사해행위 취소]

전 문

원 고 인천 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해 담당변호사 이창선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11. 17.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1. 피고와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C가 2020. 2. 12.경 < 나주시 D 임야 9,420㎡ >에 관하여 맺은 증여계약을 12,261,85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12,261,85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사건 전체 소송비용은, 피고가 -C와 연대하여-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1, 2-1, 2-2, 3~8, 을나 2, 10, 11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C와 맺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4. 8. C의 채권자인 E 주식회사에 19,845,315원을 대위변제한 후, C는 F위원회에 개인채무 조정신청을 하여, 2021. 3. 30. 원고를 대리한 F위원회 위원장과 C가 원고에 대한 채무액을 12,522,743원으로 감액 조정하기로 합의한 다음, C가 그중 260,892원을 갚은 사실, 한편 주문 제1항에 나오는 임야(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래 C의 소유재산이었는데, 2020. 2. 1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C의 아들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부상 등기원인 : '2020. 2. 12.자 증여', 이하 편의상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가 마쳐진 다음, 2020. 2. 1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의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C의 채권자인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계약이 설령 "매매에 의한 명의변경"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다르게 평가할 수는 없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사해행위 이후 담보권 설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정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맺을 당시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취지로 다투는 듯하지만,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나아가 그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발생한 원고의 C에 대한 위 구상원리금채권액{☞ 12,261,851원(= 12,522,743원 - 260,892원)}이, 이 사건 계약을 맺을 무렵 이 사건 임야의 책임재산가액{☞ 약 63,114,000원}에 크게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적은 금액인 12,261,851원을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을 12,261,85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12,261,85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 등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사 박관근